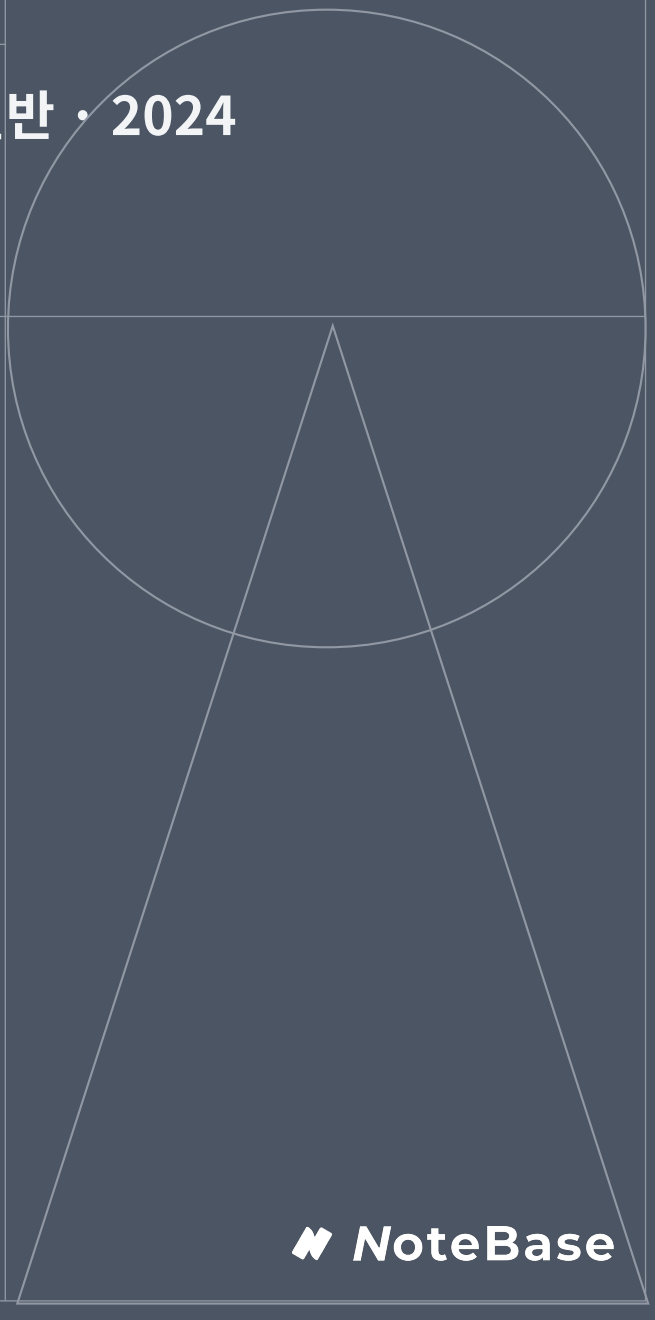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예금일반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예금일반 · 2024

공무원/계리직/9급 · 예금일반 · 2024

1. <보기>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정책금리이다.
ㄴ. 기준금리 변경은 예금, 대출 금리 등에 영향을 주지만 부동산, 외환 등 자산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ㄷ.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 양상을 보이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과열 양상을 보이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ㄹ.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물가가 상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기준금리의 결정 주체와 목적, 경기 상황에 따른 조정 방향, 예금·대출 금리와 자산가격·물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량과 경기·물가에 영향을 주기 위해 결정하는 정책금리이다. 기준금리가 변하면 시중의 예금·대출 금리뿐 아니라 소비·투자, 부동산·외환 등 자산시장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과열기에는 인상해 과도한 수요와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ㄴ이 틀렸다. ㄴ의 '부동산, 외환 등 자산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잘못된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기준금리 변경이 예금·대출 금리뿐 아니라 부동산·외환 등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 ㄷ이다.
② O — ㄱ은 기준금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정책금리라는 점에서 옳고, ㄷ은 일반적인 경기 대응 방향인 '침체 시 인하, 과열 시 인상'을 정확히 설명한다.
③ X — ㄴ과 ㄹ이 모두 틀렸다. ㄴ은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고쳐야 한다. ㄹ의 '인하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인상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방향이 반대이다. 올바르게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총수요와 물가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인상하면 총수요와 물가의 상승 압력이 낮아진다.
④ X — ㄷ은 옳지만 ㄹ이 틀렸다. ㄹ의 물가 방향을 반대로 제시한 것이 잘못이다. 올바르게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춘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 ㄷ이다.

오답 포인트

ㄴ은 기준금리의 영향이 예금·대출 금리에만 그친다고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함정이다. ㄹ은 기준금리와 물가의 일반적인 관계를 정반대로 바꾼 함정이다. 금리 인하는 소비·투자를 늘리는 방향, 금리 인상은 소비·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침체→인하, 과열→인상'이라는 경기 대응 방향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금리 인하는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춰 총수요와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금리 인상은 그 반대로 작용한다는 파급경로를 적용한다. '자산가격에는 영향이 없다'처럼 영향 범위를 단정적으로 차단한 표현은 틀린 설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침체에는 금리 인하, 과열에는 금리 인상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수요·물가 상승 압력은 커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작아진다.

NoteBase

2.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가)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면 환율이 ()한다.
(나) 환율 상승은 원화 ()(이)라고도 한다.
(다) 우리나라는 ()으로 환율을 표시하고 있다.

	(가)	(나)	(다)
①	상승	평가절상	자국통화표시법
②	하락	평가절하	자국통화표시법
③	하락	평가절하	외국통화표시법
④	상승	평가절상	외국통화표시법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외화 유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환율 상승과 원화 가치의 관계, 우리나라의 환율 표시 방법을 함께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면 외화의 공급이 늘어나므로 외화의 원화 가격인 환율은 하락한다.
우리나라에서 환율 상승은 같은 외화 1단위를 사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므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며, 이를 원화 평가절하라고 한다. 반대로 환율 하락은 원화 평가절상에 해당한다.
자국통화표시법은 외국 통화 1단위의 가치를 자국 통화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1달러당 원화 금액처럼 환율을 표시하므로 자국통화표시법을 사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다)의 자국통화표시법은 맞지만, (가)는 외화 유입 시 환율이 상승이 아니라 하락한다는 점에서 틀리고, (나)는 환율 상승이 원화 평가절상이 아니라 평가절하라는 점에서 틀렸다. 올바르게는 '하락－평가절하－자국통화표시법'이다.
② O — 외화 유입으로 외화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은 하락한다. 환율 상승은 원화 평가절하를 뜻하며, 우리나라는 자국통화표시법으로 환율을 나타낸다. 세 표현이 모두 맞다.
③ X — (가)의 하락과 (나)의 평가절하는 맞지만, (다)의 '외국통화표시법'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하락－평가절하－자국통화표시법'이다.
④ X — (가)의 '상승', (나)의 '평가절상', (다)의 '외국통화표시법'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하락－평가절하－자국통화표시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외화가 들어오면 외화가 많아지므로 환율도 오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급 증가는 외화의 가격인 환율을 낮춘다. 또한 환율 상승은 원화의 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원화로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뜻이므로 원화 평가절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환율을 외화의 원화 가격으로 본다. 외화 공급이 늘면 환율은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 '외국 통화 1단위당 원화 금액'으로 표시하면 자국통화표시법이다.

암기 포인트

외화 유입 → 환율 하락, 환율 상승 → 원화 평가절하, 원/외화 1단위 → 자국통화표시법이다.

NoteBase

3. <보기>에서 저축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MMDA)은 어음관리계좌(CMA) 및 단기금융상품펀드(MMF)와 경쟁하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ㄴ.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는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증권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ㄷ. 양도성예금증서는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금융상품으로 중도해지가 되지 않으므로 만기 전에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ㄹ. 실세금리연동형 정기예금은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적용금리를 변경하는 정기예금으로 금리 상승기 목돈 운용에 적합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저축상품의 수익 결정 방식, 예금자보호 여부, 만기 전 현금화 가능성, 금리 변동에 대한 적합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예금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을 구분하고, 중도해지와 양도를 통한 현금화를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MMDA =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으로, 잔액 등에 따라 약정금리가 달라지는 은행의 예금상품이다.
CMA = 고객의 자금을 단기금융상품 등에 운용하면서 수시입출금 기능을 제공하는 계좌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 = 만기 전 중도해지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만든 예금증서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계리직/9급 · 예금일반 · 2024

핵심 구분

ㄱ X: MMDA는 CMA 및 MMF와 경쟁하는 수시입출금형 상품이지만 실적배당상품이 아니라 은행의 예금상품이다. 틀린 표현인 '실적배당 상품'은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으로 고쳐야 한다.
ㄴ O: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상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는 보호대상이나, 증권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ㄷ X: 양도성예금증서는 중도해지는 되지 않지만 만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인 '만기 전에 현금화가 불가능하다'는 '만기 전에도 양도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ㄹ O: 실세금리연동형 정기예금은 시장실세금리의 변동을 적용금리에 반영하므로 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상품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ㄹ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ㄷ은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 'ㄱ, ㄷ'
올바른 표현: 옳은 것은 'ㄴ, ㄹ'이다.

② X
ㄹ은 옳지만, ㄱ은 MMDA를 실적배당상품이라고 한 점에서 틀리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 'ㄱ, ㄹ'
올바른 표현: 옳은 것은 'ㄴ, ㄹ'이다.

③ X
ㄴ은 옳지만, ㄷ은 양도성예금증서가 양도를 통해 만기 전 현금화될 수 있다는 점을 놓쳤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 'ㄴ, ㄷ'
올바른 표현: 옳은 것은 'ㄴ, ㄹ'이다.

④ O
ㄴ의 CMA 예금자보호 구분과 ㄹ의 금리 상승기 적합성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ㄱ에서는 '시장금리부'라는 말만 보고 MMDA를 실적배당상품으로 오해하기 쉽다. MMDA는 시장금리를 반영하더라도 은행 예금이다. ㄷ에서는 '중도해지 불가'를 '현금화 불가'와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된다. 양도성예금증서는 해지는 할 수 없어도 양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상품이 예금인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인지 구분한다. 다음으로 CMA는 취급기관이 종합금융회사인지 증권회사인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만기 전 자금 회수 문제에서는 중도해지 가능 여부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를 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MMDA는 예금, 종금회사 CMA만 보호, CD는 해지 불가·양도 가능, 실세금리연동형 예금은 금리 상승기에 유리하다.

NoteBase

4. <보기>와 같은 조건일 때 단리 계산과 복리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현재 원금	총 투자 기간	이자율
1,000,000원	5년	연 5%

① 단리 계산 시 5년 후의 원리금은 1,250,000원이 된다.
② 복리 계산 시 5년 후의 원리금 계산식은 1,000,000원×$(1+0.05)^5$이다.
③ 총 투자 기간 중 처음 1년 거치기간에 대한 단리 계산과 복리 계산 결과의 원리금은 동일하지 않다.
④ 복리 계산 시 '72의 법칙'에 따라 10년 소요 기간 동안 현재 원금의 2배가 되려면 <보기>의 이자율보다 연 2.2%p가 더 높아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단리는 매 기간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원금과 누적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다는 차이를 이용해 각 설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현재 원금: 1,000,000원
총 투자 기간: 5년
연이자율: 5%
구해야 할 것: 단리와 복리의 원리금, 첫 1년의 결과, 72의 법칙에 따른 10년 내 원금 2배 조건

사용할 공식

단리 원리금: $A = P(1 + rn)$
복리 원리금: $A = P(1 + r)^n$
72의 법칙에 따른 원금 2배 소요 기간: $n \approx \frac{72}{r}$ (이때 r은 연이자율의 백분율 수치이다.)

단리는 매년 최초 원금만을 이자 계산의 기준으로 삼고, 복리는 매년 직전까지 누적된 원리금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각각의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단리의 5년 후 원리금은 $1{,}000{,}000 \times (1 + 0.05 \times 5) = 1{,}250{,}000$이므로 1,250,000원이다.
2. 복리의 5년 후 원리금은 $1{,}000{,}000 \times (1 + 0.05)^5$이며, 약 1,276,282원이다.
3. 첫 1년 후에는 단리와 복리 모두 $1{,}000{,}000 \times (1 + 0.05) = 1{,}050{,}000$이므로 1,050,000원으로 같다.
4. 72의 법칙상 10년 만에 원금이 2배가 되려면 $r \approx 72 \div 10 = 7.2\%$이다. 이는 보기의 연 5%보다 2.2%p 높다.

선지 판단

① O — 단리 계산은 $1{,}000{,}000 \times (1 + 0.05 \times 5) = 1{,}250{,}000$이므로 5년 후 원리금은 1,250,000원이다.

② O — 복리는 매년 누적 원리금에 이자가 붙으므로 5년 후 계산식은 $1{,}000{,}000 \times (1 + 0.05)^5$이다.

③ X — '처음 1년 거치기간에 대한 단리 계산과 복리 계산 결과의 원리금은 동일하지 않다'가 틀린 표현이다. 첫 1년에는 아직 이전 기간의 이자가 누적되지 않았으므로 두 방식의 원리금은 모두 1,050,000원으로 동일하다. 올바르게는 '처음 1년 거치기간에 대한 단리 계산과 복리 계산 결과의 원리금은 동일하다'이다.

④ O — 72의 법칙에 따르면 10년 내 원금이 2배가 되기 위한 연이자율은 약 $72 \div 10 = 7.2\%$이고, 이는 연 5%보다 2.2%p 높다.

오답 포인트

③에서 복리는 항상 단리보다 원리금이 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복리 효과는 첫 이자가 붙은 뒤 그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두 번째 기간부터 나타난다. 따라서 첫 1년 말에는 단리와 복리의 원리금이 같다. 또한 ④의 2.2%p는 7.2%와 5%의 차이인 퍼센트포인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리는 $P(1 + rn)$, 복리는 $P(1 + r)^n$으로 계산하고, 첫 1년에는 두 식이 모두 $P(1 + r)$가 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72의 법칙에서는 목표 연수로 72를 나누어 필요한 연이자율의 백분율 수치를 구한다.

암기 포인트

첫 1년은 단리와 복리가 같고, 복리의 차이는 두 번째 기간부터 생긴다. 원금 2배의 근사 관계는 '연이자율(%) × 기간(년) ≈ 72'이다.

NoteBase

5. 투자의 위험(ris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자에서의 위험은 미래에 받게 되는 수익이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부정적 상황 외 긍정적 가능성도 포함된다.

② 분산투자를 통해서 위험의 크기를 줄일 수 없는 부분을 분산불가능 위험 또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③ 투자 레버리지 공식에 따르면 총 투자액 1천만 원 중 5백만 원이 자기 자본일 경우, 레버리지는 2배가 된다.

④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의 수익률인 무위험 수익률과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증가하는 기대수익률인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한 값과 같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투자위험의 의미, 분산투자로 줄일 수 있는 위험의 종류, 레버리지와 기대수익률의 기본 관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투자위험: 미래 수익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손실 가능성뿐 아니라 예상보다 높은 수익 가능성도 포함한다.
체계적 위험: 시장 전체의 변동에서 생겨 분산투자로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고유 요인에서 생겨 분산투자로 줄일 수 있는 위험이다.
레버리지: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타인자본 등을 활용하여 자기자본보다 큰 규모로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 레버리지=총 투자액자기자본이다.
기대수익률: 무위험수익률에 위험을 부담한 대가인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한 값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투자위험은 미래 수익의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정도이다. 예상보다 낮은 수익이나 손실뿐 아니라 예상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포함하므로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분산투자로 줄일 수 없는 부분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이다. 올바르게는 분산투자로 줄일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 또는 분산불가능 위험이라고 하며,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로 줄일 수 있는 개별 위험이다.
③ O — 총 투자액 1천만 원을 자기자본 5백만 원으로 나누면 투자 레버리지는 2배이다.
④ O — 투자자의 기대수익률은 위험이 없는 경우의 무위험수익률과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인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한 값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②는 '분산투자'라는 단어만 보고 비체계적 위험을 떠올리게 만든다. 그러나 분산투자로 줄어드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이고, 끝까지 남는 것은 체계적 위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위험 유형은 분산투자로 제거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거 가능하면 비체계적 위험, 제거 불가능하면 체계적 위험이다. 레버리지는 총 투자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누고, 기대수익률은 무위험수익률과 리스크 프리미엄의 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분산으로 줄이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 분산해도 남는 것은 체계적 위험이다.

NoteBase

6. 주식투자와 채권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상증자는 기업의 자기 자본이 확대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

② 우선주는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사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주식을 말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③ 교환사채는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

④ 주식 분할은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렵거나 현금을 아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유상증자, 우선주, 전환사채, 주식 분할의 의미와 재무적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상증자는 주주 등으로부터 납입을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므로 회사에 외부 자금이 유입되고 자기자본이 증가한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갖지만, 사채권자보다 변제 순위가 앞서는 것은 아니다. 의결권은 없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전환사채는 일정한 전환 조건과 기간에 보유자의 청구로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이다.
주식 분할은 기존 주식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주식 수를 늘리고 주당 액면가액을 낮추는 것으로,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하거나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주식배당과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 대금이 회사에 유입되어 자기자본이 증가하므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타인자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② X —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하지만 사채권자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사채권자는 주주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③ X — 전환사채는 정해진 전환청구기간에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이다. 선지는 전환사채의 권리 행사를 주식과의 '교환'이라고 표현하였으므로 부정확하다.
④ X — 제시된 설명은 주식배당에 관한 것이다. 주식 분할은 한 주를 여러 주로 나누어 주식 수를 늘리고 주당 액면가액을 낮추는 절차로, 이익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배당이 아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우선주의 우선권이 보통주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놓치게 한다. ④는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공통점만 이용하여 주식 분할과 주식배당을 혼동하게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상증자는 외부 자금의 유입 여부, 우선주는 사채권자와 보통주 사이의 권리 순위, 전환사채는 보유자의 전환청구권, 주식 분할은 주식배당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유상증자는 외부 자금 유입·자기자본 증가,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우선하되 사채보다 후순위, 전환사채는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 주식 분할은 주식 수 증가·주당 액면가액 감소이다.

NoteBase

7. <보기>에서 우체국 금융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의 총 개수는?

< 보 기 >

ㄱ. 체크카드	ㄴ. 펀드판매	ㄷ. 증권계좌개설
ㄹ. 전자금융서비스	ㅁ. 우편환·대체	ㅂ. 신탁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 금융이 직접 취급하거나 업무 제휴를 통해 대행하는 금융 업무의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우체국 금융의 취급·대행 업무와 제한되는 업무를 나누어 개수를 세는 것이다.

용어 풀이

우체국 금융의 업무 범위 = 우체국예금·보험을 비롯하여 우체국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 업무와 금융기관과의 제휴로 창구에서 대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핵심 구분

체크카드, 펀드판매, 전자금융서비스, 우편환·대체는 우체국 금융의 취급 업무에 포함된다. 증권계좌 개설도 민영 금융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우체국 창구에서 대행하는 업무에 포함된다. 반면 신탁은 우체국 금융이 제한받는 업무이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ㅁ의 5개가 해당하고 ㅂ은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해당 항목은 ㄱ, ㄴ, ㄷ, ㄹ, ㅁ의 5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 틀린 표현: 2개
- 올바른 표현: 5개

② X
- 체크카드·펀드판매·증권계좌 개설·전자금융서비스·우편환·대체가 모두 포함되므로 3개가 아니다.
- 틀린 표현: 3개
- 올바른 표현: 5개

③ X
- 신탁만 제외되고 나머지 다섯 항목이 포함되므로 4개가 아니다.
- 틀린 표현: 4개
- 올바른 표현: 5개

④ O
- ㄱ 체크카드, ㄴ 펀드판매, ㄷ 증권계좌 개설, ㄹ 전자금융서비스, ㅁ 우편환·대체의 5개가 우체국 금융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ㅂ 신탁은 제외된다.

오답 포인트

증권계좌 개설을 우체국의 고유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하기 쉽다. 그러나 우체국은 민영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증권계좌 개설을 대행하므로 업무 범위에 포함한다. 신탁은 펀드판매와 달리 우체국 금융이 제한받는 업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항목을 우체국의 직접 취급 업무, 제휴 대행 업무, 제한 업무로 나눈다. 직접 취급 업무와 제휴 대행 업무는 포함하고, 제한 업무인 신탁은 제외한 뒤 개수를 센다.

암기 포인트

체크·펀드·증권계좌 대행·전자금융·우편환·대체는 포함, 신탁은 제외이다.

NoteBase

8. 예금채권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명식예금은 지명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양도성이 인정된다.

② 예금주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예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무효이다.

③ 은행(우체국)양도승낙서는 예금채권에 대해 권리가 경합한 때 누가 우선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④ 실무상 양도인인 예금주가 예금양도 통지만을 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하나 그 양도로 은행(우체국)에 대항할 수는 없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예금채권의 양도성과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양도 당사자 사이의 효력, 은행(우체국)에 대한 대항요건, 권리가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 기준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대항요건 = 이미 성립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다.
확정일자 = 증서가 특정한 날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일자이다.

핵심 구분

기명식예금의 예금채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특약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지만,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권리가 경합하면 단순한 양도승낙서의 존재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각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이루어진 시각의 선후로 우열을 정한다. 이는 민법 제449조와 제450조 및 지명채권 이중양도에 관한 판례의 기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기명식예금의 예금채권은 특정 예금주를 채권자로 하는 지명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② O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다만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은행이 그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예외가 있으며, 선지는 원칙을 나타낸다.

③ X
은행(우체국)의 양도승낙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합하는 권리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 은행(우체국)양도승낙서는 누가 우선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올바른 표현: 권리가 경합하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은행(우체국)에 도달한 시각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이루어진 시각의 선후가 우선순위의 기준이 된다.

④ O
예금주와 양수인 사이의 양도 합의만으로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가 성립한다. 그러나 양도금지특약이 적용되는 예금 실무에서는 은행(우체국)의 승낙 없이 양도통지만 한 경우 그 양도로 은행(우체국)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특약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오답 포인트

③의 '양도승낙서'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시점'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승낙은 대항요건을 갖추는 한 방법이지만, 경합하는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단순한 서류 명칭이나 작성일이 아니라 법정 방식과 도달·승낙 시점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채권양도 문항에서는 먼저 당사자 사이의 양도 성립 여부를 보고, 다음으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여부를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제3자와 경합하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시각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시각을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당사자 사이에는 합의, 채무자에게는 통지·승낙, 제3자와의 경합에는 확정일자와 도달·승낙 시점이 핵심이다.

NoteBase

9. <보기>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금융회사 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사용 목적은 기록·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ㄴ. 금융회사 직원이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ㄷ.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자료라도 비밀보장 대상이 된다.

ㄹ. 금융회사 업무 종사자는 본인이 취급하는 업무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 비밀보장 의무가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범위, 거래정보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항목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명의인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의 기록 예외와 식별 불가능한 정보의 취급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거래정보등은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과 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거래 기록 및 그 기록에서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다만 그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거래자를 알 수 없는 정보는 제외된다.

핵심 구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면서,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 목적'을 기록 항목에서 제외한다. 비밀보장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고, 비식별 정보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 ㄷ)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공한 경우 사용 목적은 기록·관리 항목에서 제외되지만,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이나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거래정보등에서 제외된다.
틀린 표현: ‘ㄱ, ㄷ’
올바른 표현: 옳은 조합은 ‘ㄱ, ㄹ’이다.

② O (ㄱ, ㄹ)
ㄱ은 서면 동의를 받은 제공의 경우 사용 목적을 기록 항목에서 제외하는 법률상 예외에 해당한다. ㄹ도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③ X (ㄴ, ㄹ)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는 단순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이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틀린 표현: ‘ㄴ, ㄹ’ 및 ㄴ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올바른 표현: 옳은 조합은 ‘ㄱ, ㄹ’이며,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④ X (ㄷ, ㄹ)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누구의 금융거래인지 식별할 수 없는 자료는 비밀보장 대상인 거래정보등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른 거래정보등과 쉽게 결합하여 거래자를 알 수 있다면 제외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ㄷ, ㄹ’ 및 ㄷ의 ‘식별할 수 없는 자료라도 비밀보장 대상이 된다’
올바른 표현: 옳은 조합은 ‘ㄱ, ㄹ’이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거래자를 식별할 수 없는 자료는 거래정보등에서 제외된다.

오답 포인트

ㄱ에서 서면 동의를 받으면 모든 기록 의무가 사라진다고 오해하기 쉽다.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록 항목 중 ‘사용 목적’만 제외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또한 ㄴ의 과태료와 형사벌, ㄷ의 식별 가능 정보와 비식별 정보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정보가 특정인과 연결되는 거래정보등인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명의인의 서면 동의가 있는지를 보고 기록 항목의 예외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위반행위가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벌 조항을 적용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서면 동의 제공은 사용 목적 기록 제외, 완전 비식별 정보는 보호 범위 제외, 비밀 누설은 형사벌이다.

NoteBase

10. 제한능력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13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4촌 이내의 친족도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노령,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이다.

④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된 제한능력자이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제한능력자 중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과 한정후견의 개시·효과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피한정후견인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제한능력자 =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법률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제한되는 사람이다.
피한정후견인 = 질병·장애·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핵심 구분

민법 제12조에 따르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13조에 따르면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에 한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을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민법 제1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② O
민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O
민법 제12조 제1항의 한정후견개시 요건을 정확히 설명한 선지이다.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피한정후견인이 된다.

④ X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고, 가정법원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단독 행위가 제한된다.
틀린 표현: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모두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다.
올바른 표현: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행위능력이 제한되며,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으나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에 한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오답 포인트

④는 제한능력자라는 공통 명칭을 이용하여 세 유형의 제한 방식이 모두 같다고 착각하게 한다. 특히 피한정후견인을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묶은 부분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선지는 먼저 '원칙적으로 단독 행위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그다음 가정법원이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했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한정후견은 전면 제한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범위만 제한한다.

NoteBase

11.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제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상대방의 금융정보 교환 의무, 인적 사항 확인 절차, 과태료 규정 등을 정의하고 있다.

② 의심거래보고(STR)를 허위로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고객확인제도(CDD)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실지명의(성명, 실명번호) 이외에 주소, 연락처,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④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는 차등화된 고객 확인을 실시하여 고객의 실지명의(성명, 실명번호) 및 CDD 확인 이외에 금융거래 목적·거래자금의 원천 등까지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근거 법률과 의심거래보고(STR), 고객확인제도(CDD),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의 내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각 제도의 법적 근거·확인 범위·제재를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STR = 금융회사등이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이다.
CDD = 고객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여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제도이다.
EDD = 자금세탁 위험이 큰 고객이나 거래에 대하여 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이다.

핵심 구분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17조는 의심거래보고 등을 거짓으로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일반적인 고객확인에서는 고객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큰 경우에는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직접적인 근거 법률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보고, 고객확인 및 제재의 기본 근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다.
- 틀린 표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정한다.
- 올바른 표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정한다.

② O
- 특정금융정보법은 의심거래보고 등을 거짓으로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③ O
- CDD는 단순한 실명확인보다 넓은 제도이다. 고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뿐 아니라 주소·연락처와 실제 소유자 등도 확인한다.

④ O
- EDD는 위험기반 접근에 따라 고위험 고객이나 고위험 거래에 더 엄격한 확인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인 고객확인에 더하여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국제적인 금융정보 교환이라는 표현 때문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직접적인 근거 법률로 착각하게 하는 데 있다. 조세 목적의 금융정보 교환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STR·CDD·EDD의 법적 체계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제도와 근거 법률을 연결한다. STR·CDD·EDD가 나오면 특정금융정보법을 떠올리고, CDD는 신원·실제 소유자 확인, EDD는 고위험 고객·거래에 대한 거래 목적·자금 원천의 추가 확인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특정금융정보법은 STR·CDD·EDD의 기본 법률이고, EDD는 CDD에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확인을 더한 제도이다.

NoteBase

12. 다음 밑줄 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① 예금성 상품의 경우, 수익률 등 변동 가능성이 없는 상품에 한정하여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적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을 권유할 경우에도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에 해당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의 적용 대상과 내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적합성원칙은 판매자가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소비자 정보를 파악하여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적정성원칙은 판매자의 권유 없이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계약하려는 경우 그 상품이 부적정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도록 하는 원칙이다. 설명의무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할 때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의무이다.

핵심 구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는 적합성원칙, 제18조는 적정성원칙, 제19조는 설명의무, 제20조는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21조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규정한다. 적합성원칙은 '권유 단계의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이고, 적정성원칙은 '비권유 계약에서 부적정 사실의 고지 및 확인'이다. 설명의무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한 경우뿐 아니라 판매자가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예금성 상품 중 적합성원칙의 대상은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다. 선지는 적용 대상을 정반대로 제시하였다.
틀린 표현: '수익률 등 변동 가능성이 없는 상품에 한정하여'
올바른 표현: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예금성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적합성원칙이 적용된다.

② X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적정성원칙이 아니라 적합성원칙이다. 적정성원칙은 권유 없이 계약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도록 한다.
틀린 표현: '적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
올바른 표현: '적합성의 원칙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며, 적정성원칙에서는 비권유 계약의 부적정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는다.

③ O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와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모두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 X
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한 것처럼 알리는 행위는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해당한다. 불공정영업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이다.
틀린 표현: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에 해당'
올바른 표현: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변동 가능성이 없는'과 ②의 '적정성'은 핵심 요건을 반대로 바꾼 표현이다. 또한 ④는 허위·단정적 권유를 우월적 지위 남용인 불공정영업행위와 혼동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판매자가 권유했는지를 확인한다. 권유하면서 소비자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권하는 문제는 적합성원칙, 권유 없이 계약하려는 상품이 맞지 않는다고 알리는 문제는 적정성원칙으로 판단한다. 이어서 중요사항의 안내는 설명의무, 거짓·단정적 권유는 부당권유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요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구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적합성은 ‘권유 금지’, 적정성은 ‘비권유 시 부적정 고지’, 설명은 ‘권유 또는 요청’, 거짓 권유는 ‘부당권유’이다.

NoteBase

13. 다음 우체국 금융직원 중 가장 적절히 예금업무 처리를 한 직원으로 옳은 것은?

① 연선: 고객이 방금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했다고 해서 즉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했어.

② 승재: 고객이 대여금고를 약정하러 왔었는데 계속적 금융거래가 아니라서 고객확인제도(CDD)에서 말하는 고객 확인을 하지는 않았어.

③ 명은: 고객이 전화로 기업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인터넷뱅킹으로 가입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무조건 우체국 방문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어.

④ 민경: 대리인(乙)이 우체국에 와서 본인(甲)의 신분증 사본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물어보길래 사본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어.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출약정 시 고객확인, 기업인터넷뱅킹 가입, 대리인의 계좌개설에 관한 우체국 금융직원의 올바른 업무 처리를 묻는다. 핵심은 각 업무에서 먼저 거쳐야 할 절차와 필요한 확인 서류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고객확인제도(CDD)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과 실제소유자 등을 확인하여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제도이다. 대출계약 체결도 금융거래를 개시하기 위한 계약이므로 고객확인 대상인 '계좌의 신규개설' 범위에 포함된다.

핵심 구분

착오송금은 먼저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한다. 대출약정 시에는 거래가 계속적인지와 무관하게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우체국 기업인터넷뱅킹은 전자금융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해 약정을 등록한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대리권과 명의인·대리인의 실명을 확인해야 하며, 본인 신분증 사본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에 즉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다. 먼저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연락 불가나 반환 거부 등으로 반환받지 못한 뒤 예금보험공사에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틀린 표현: '즉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올바른 표현: '먼저 송금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이다.

② X
고객확인제도에서 말하는 계좌의 신규개설에는 예금계좌뿐 아니라 대출계약의 체결도 포함된다. 따라서 대출약정 단계에서 고객확인을 생략한 처리는 부적절하다.
틀린 표현: '계속적 금융거래가 아니라서 고객 확인을 하지 않았다'
올바른 표현: '대출계약의 체결도 고객확인 대상이므로 고객 확인을 해야 한다'이다.

③ O
우체국 기업인터넷뱅킹을 처음 이용하려면 전자금융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전자금융 약정을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뱅킹 화면에서 바로 신규 가입할 수 없고 우체국 방문이 필요하다고 안내한 것은 적절하다.

④ X
대리인의 계좌개설에서는 대리권과 본인·대리인의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인 신분증은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 대리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틀린 표현: '본인의 신분증 사본으로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올바른 표현: '본인 신분증 사본과 함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대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즉시'와 ④의 '사본으로는 불가능'처럼 절차를 생략하거나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표현이 함정이다. 또한 ②에서는 일회성 거래 여부만 보고 대출계약 자체가 고객확인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금융업무 사례는 '먼저 거칠 절차', '고객확인 대상 거래인지', '방문 약정이 필요한지', '대리권과 실명확인 서류가 갖추어졌는지'를 차례로 대입하여 판단한다. '즉시', '무조건', '사본은 불가'와 같은 단정 표현은 예외와 보완서류의 존재를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착오송금은 금융회사 반환요청 후 예금보험공사, 대출약정은 CDD, 기업인터넷뱅킹 신규 약정은 우체국 방문, 대리 계좌개설은 사본 여부보다 대리권·구비서류 확인이 핵심이다.

NoteBase

14. <보기>에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 보 기 >

ㄱ. 이 약관은 국민의 저축 의욕을 북돋우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ㄴ. 예금이율을 변경할 때에는 예금이율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ㄷ.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ㄹ. 예금이율을 변경한 때에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금리를 변경한 다음 날로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목적, 예금이율의 변경·적용, 긴급한 약관 변경 절차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변경 전에 게시'와 '변경 후 일정 기간 게시', '변경한 날'과 '그다음 날'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거치식예금은 목돈을 일정 기간 맡기는 예금이고, 적립식예금은 일정 기간 돈을 나누어 불입하는 예금이다.
변동금리 예금은 계약 후에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율이 바뀔 수 있는 예금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계리직/9급 · 예금일반 · 2024

핵심 구분

ㄱ X: 이 약관은 예금거래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우체국과 예금주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본적·일반적 사항을 정한다. ‘국민의 저축 의욕 고취와 공공복리 증진’이 약관의 목적이라는 표현은 틀리다.
ㄴ X: 예금이율을 바꾸면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게시한다’는 표현은 틀리다.
ㄷ O: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 또는 공고한다.
ㄹ X: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동금리 예금은 이율을 바꾼 날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한다. ‘바꾼 다음 날부터’라는 표현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 하나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옳은 문장은 ㄷ 하나이므로 ‘1개’가 맞다.

② X
- 옳은 문장이 2개라는 계산은 ㄴ이나 ㄹ을 잘못 포함한 것이다.
- 틀린 표현: 2개
- 올바른 표현: 옳은 것은 ㄷ 하나이므로 1개이다.

③ X
- ㄱ·ㄴ·ㄹ이 모두 틀리므로 옳은 문장은 3개가 아니다.
- 틀린 표현: 3개
- 올바른 표현: 옳은 것은 ㄷ 하나이므로 1개이다.

④ X
- 네 문장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니며 ㄱ·ㄴ·ㄹ은 틀리다.
- 틀린 표현: 4개
- 올바른 표현: 옳은 것은 ㄷ 하나이므로 1개이다.

오답 포인트

ㄴ의 ‘변경시행일 1개월 전’은 약관 자체의 일반적인 변경 절차와 예금이율 변경 후의 게시 절차를 섞은 표현이다. 또한 ㄹ은 변경이율 적용 시점을 ‘바꾼 날’이 아니라 ‘다음 날’로 바꾸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간이나 적용 시점을 묻는 약관 문항에서는 ‘전에’, ‘동안’, ‘그날부터’, ‘다음 날부터’를 먼저 표시한다. 각 문장을 개별적으로 O/X 판단한 뒤 O의 개수만 세어 답지를 고른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이율 변경은 1개월 동안 게시하고, 변동금리는 바꾼 날부터 적용하며, 긴급한 약관 변경은 즉시 게시 또는 공고한다.

NoteBase

15. 우체국 적립식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달달하이(high) 적금은 1개월 또는 2개월의 초단기로 가입하는 스마트뱅킹 전용 적립식 예금으로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다.

② 우체국 마미든든 적금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월 30만 원 이상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약정을 할 경우, 부가서비스로 우체국 쇼핑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③ 우체국 아이LOVE적금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우체국 주니어보험 무료가입, 통장명 자유 선정, 자동 재예치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2040+α 자유적금은 여행 자금, 모임회비 등 목돈 마련을 위해 여럿이 함께 자유롭게 저축할수록 다양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적립식 예금별 가입 대상, 가입 기간, 부가서비스와 상품 목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달달하이(high)적금은 실명의 개인이 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하는 1개월 또는 2개월의 초단기 적금이다.
우체국 마미든든적금은 일하는 여성과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정 등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적금이다.
우체국 아이LOVE적금은 어린이·청소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주니어 전용 적금이다.
2040+α자유적금은 봉급생활자, 신용카드 가맹점, 법인 등의 자유로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적금이다.
여행자금이나 모임회비를 위해 여럿이 함께 저축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상품은 우체국 가치모아적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달달하이(high)적금은 스마트뱅킹 전용 자유적립식 예금으로, 가입 기간은 1개월 또는 2개월이고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다.
② O — 우체국 마미든든적금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월 3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약정한 경우 우체국쇼핑 할인쿠폰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한다.
③ O — 우체국 아이LOVE적금은 가입 고객에게 주니어보험 무료가입, 통장명 자유 선정, 자동 재예치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니어 전용 적금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2040+α자유적금'이다. 2040+α자유적금은 봉급생활자, 신용카드 가맹점, 법인 등의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이다. 올바르게 고치면 '우체국 가치모아적금은 여행자금, 모임회비 등의 목돈 마련을 위해 여럿이 함께 저축할수록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이다'가 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자유적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임 목적의 공동 저축 상품처럼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그러나 '여행자금·모임회비·여럿이 함께 저축'은 우체국 가치모아적금의 핵심 표현이며, 2040+α자유적금의 핵심 대상은 봉급생활자, 신용카드 가맹점, 법인 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 설명의 대표 키워드를 상품명과 연결해 판단한다. '1~2개월·모바일'은 달달하이(high)적금, '워킹맘·월 30만원 자동이체·쇼핑쿠폰'은 마미든든적금, '주니어보험·자동 재예치'는 아이LOVE적금, '여행·모임·함께 저축'은 가치모아적금이다.

암기 포인트

달달하이는 초단기, 마미든든은 워킹맘, 아이LOVE는 주니어, 가치모아는 여행·모임, 2040+α는 직장인·가맹점·법인이다.

NoteBase

16. <보기>에서 우체국 예금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저축예금은 개인과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ㄴ. 듬뿍우대저축예금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예치 금액별로 차등 금리를 적용하는 개인 MMDA 상품이다.
ㄷ. 우체국 청년미래든든통장은 가입대상이 18세부터 30세까지 실명의 개인이며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ㄹ. 우체국 생활든든통장은 가입대상이 50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며 시니어 특화예금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상품별 가입 대상, 금리 적용 방식, 연령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저축예금은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듬뿍우대저축예금은 개인을 대상으로 예치금액별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MMDA 상품이다.
청년미래든든통장은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실명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든든통장은 50세 이상 실명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특화예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ㄴ은 옳지만 ㄱ이 틀렸다. ㄱ의 '개인과 법인 고객'이 잘못된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개인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따라서 ㄱ, ㄴ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② X
ㄱ과 ㄷ이 모두 틀렸다. ㄱ의 가입 대상은 개인만이며, ㄷ의 '18세부터 30세까지'는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ㄱ, ㄷ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③ O
ㄴ과 ㄹ이 모두 옳다. 듬뿍우대저축예금은 개인 대상의 예치금액별 차등금리 MMDA 상품이고, 생활든든통장은 50세 이상 실명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특화예금이다.

④ X
ㄹ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ㄷ의 '18세부터 30세까지'가 잘못된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실명 개인'이다. 따라서 ㄷ, ㄹ의 조합은 옳지 않다.

오답 포인트

ㄱ에서는 저축예금의 자유로운 입출금만 보고 가입 대상까지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법인이 포함된다는 부분이 틀리다. ㄷ에서는 청년 상품이라는 인상만으로 상한 연령 30세를 받아들이기 쉽지만 실제 상한은 만 35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 설명을 '가입 대상·입출금 방식·금리 방식·연령 요건'으로 나누어 대조한다. 저축예금은 개인만, 듬뿍우대저축예금은 개인 MMDA, 청년미래든든통장은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 생활든든통장은 50세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저축예금은 개인만, 듬뿍우대는 개인 MMDA, 청년미래든든은 18~35세, 생활든든은 50세 이상이다.

NoteBase

17. 우체국 공익형 예금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체국 새출발자유적금의 새출발 행복 패키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공익형 적립식 예금이다.

② 우체국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가입대상이 실명의 개인이며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다.

③ 우체국 건설하나로통장의 가입대상은 자격 확인 증빙서류를 통해 건설업 종사자임을 알 수 있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④ 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군 병사의 군 복무 중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금융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공익형 예금상품별 가입대상과 지원 목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익형 예금상품은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금융소외계층·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는 상품이다. 새출발자유적금의 '희망' 패키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지원하고, '행복' 패키지는 헌혈자, 입양자, 장기·골수기증자, 다자녀가정 등 사랑 나눔 실천자와 생활 기반 지원 대상자를 우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새출발 행복 패키지'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새출발 희망 패키지'이다. 따라서 '우체국 새출발자유적금의 새출발 희망 패키지는 해당 대상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공익형 적립식 예금이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우체국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다. 가입대상은 국민연금을 받는 실명의 개인이며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할 수 있다.

③ O
우체국 건설하나로통장은 자격 확인 증빙서류로 건설업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가입하는 건설업 종사자 전용 통장이다.

④ O
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군 병사의 군 복무 중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적립식 예금이며, 금융거래 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지원 대상 자체를 틀리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속하는 패키지 이름을 '희망'에서 '행복'으로 바꾼 선지이다. 대상자 목록만 보고 맞다고 판단하면 패키지 구분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 설명을 볼 때 '가입대상-보호 목적-예금 형태'를 묶어서 확인한다. 새출발자유적금은 사회적 배려 대상이면 '희망', 헌혈·기증·입양 등 사랑 나눔 실천 관련 대상이면 '행복'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새출발 희망은 사회적 배려 대상, 새출발 행복은 사랑 나눔 실천 대상이다. 국민연금안심은 연금 압류방지, 건설하나로는 건설업 종사자, 장병내일준비는 군 복무 중 목돈 마련이다.

NoteBase

18. <보기>에서 설명하는 우체국 거치식 예금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가) 가입기간(연, 월, 일 단위) 및 이자 지급방식(만기일시지급식, 월이자지급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고객맞춤형 정기예금이다.

(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전용 상품이며 온라인 예·적금 가입, 자동이체 약정, 체크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이다.

	(가)	(나)
①	이웃사랑정기예금	e-Postbank정기예금
②	이웃사랑정기예금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③	챔피언정기예금	e-Postbank정기예금
④	챔피언정기예금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정기예금의 상품별 가입 방식과 우대 조건을 보고 상품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챔피언정기예금: 가입기간을 연·월·일 단위로 정하고, 이자 지급방식을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고객맞춤형 정기예금이다.
e-Postbank정기예금: 실명의 개인이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하며, 온라인 예·적금 가입, 자동이체 약정, 체크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는 온라인 전용 정기예금이다.
따라서 (가)는 챔피언정기예금, (나)는 e-Postbank정기예금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를 이웃사랑정기예금으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가입기간과 이자 지급방식을 자유롭게 고르는 고객맞춤형 상품은 챔피언정기예금이다. 올바르게는 '(가) 챔피언정기예금, (나) e-Postbank정기예금'이다.

② X
(가)와 (나)의 상품명이 모두 틀렸다. (가)의 '이웃사랑정기예금'은 '챔피언정기예금'으로, (나)의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은 'e-Postbank정기예금'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가)의 가입기간·이자 지급방식 자유 선택은 챔피언정기예금의 특징이고, (나)의 온라인 전용 가입과 거래 실적별 우대금리는 e-Postbank정기예금의 특징이다. 두 상품명이 모두 바르게 연결되었다.

④ X
(가)의 챔피언정기예금은 맞지만, (나)를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으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온라인 예·적금 가입, 자동이체 약정, 체크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e-Postbank정기예금이다. 올바르게는 '(가) 챔피언정기예금, (나) e-Postbank정기예금'이다.

오답 포인트

두 상품 모두 정기예금이고 명칭에 온라인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있어 혼동하기 쉽다. (가)의 결정적 표현은 '가입기간과 이자 지급방식의 자유 선택'이고, (나)의 결정적 표현은 '온라인 전용·거래 실적별 우대금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 설명에서 가입 경로, 선택 가능한 조건, 우대금리 요건을 먼저 찾는다. '기간·이자방식 맞춤 선택'이면 챔피언정기예금,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과 거래 실적 우대'이면 e-Postbank정기예금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챔피언은 기간·이자방식 맞춤 선택, e-Postbank는 온라인 가입·실적 우대이다.

NoteBase

19.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용 체크카드의 기본 사용한도는 일 1천만 원, 월 2천만 원이며, 최대 사용한도는 일 5천만 원, 월 3억 원이다.

② 법인용 체크카드의 발급대상은 일반법인,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임의단체)이다.

③ 개이득 체크카드는 음식점·대형마트 5%, 약국·골프 10%, 영화·숙박 15% 할인 등 생활형 실속 혜택을 제공한다.

④ 행복한 체크카드는 환경부 인증 친환경 카드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이용 시 최대 20% 캐시백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체크카드의 법인 발급대상과 이용한도, 개인용 카드별 대표 혜택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법인용 체크카드: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도 발급대상에 포함된다.
카드별 대표 특징: 개이득은 전 가맹점과 OTT·패션·멤버십 혜택, 브라보는 음식점·대형마트·약국·골프·영화·숙박 혜택, 영리한PLUS는 친환경 카드와 디지털콘텐츠 혜택, 행복한은 의료·교육·쇼핑·문화 중심 혜택으로 구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법인용 체크카드의 기본 일 한도를 1천만 원, 최대 일 한도를 5천만 원이라고 한 부분이다. 법인용 체크카드의 기본 사용한도는 일 600만 원·월 2천만 원이고, 증액 가능한 최대한도는 일 1억 원·월 3억 원이다.

② O
법인용 체크카드의 발급대상은 일반법인,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이다. 발급대상을 법인등기된 법인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정확하다.

③ X
틀린 표현은 음식점·대형마트 5%, 약국·골프 10%, 영화·숙박 15% 혜택을 '개이득 체크카드'의 혜택이라고 한 부분이다. 이는 브라보 체크카드의 대표 혜택이다. 개이득 체크카드는 국내 전 가맹점 0.3% 캐시백과 OTT·패션·멤버십 30% 캐시백 등이 핵심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환경부 인증 친환경 카드와 디지털콘텐츠 최대 20% 캐시백을 '행복한 체크카드'의 특징이라고 한 부분이다. 이는 영리한PLUS 체크카드의 특징이다. 행복한 체크카드는 병·의원, 약국, 학원, 대형마트, 문화 분야 10% 캐시백과 우편서비스 12% 캐시백 등 의료·생활 분야 혜택이 중심이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할인율 자체보다 카드명을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혜택의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브라보의 혜택을 개이득으로, 영리한PLUS의 혜택을 행복한으로 오인하기 쉽다. ①도 월 한도 일부가 맞아 보이지만 일 한도가 틀리므로 전체 문장은 옳지 않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급대상 문제에서는 '법인·개인사업자·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를 한 묶음으로 확인한다. 카드 혜택 문제에서는 카드명과 대표 키워드를 먼저 연결한 뒤 할인율과 한도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법인 발급대상은 법인·개인사업자·고유(납세)번호 단체이다. 개이득은 OTT·패션·멤버십, 브라보는 생활·건강·문화, 영리한PLUS는 친환경·디지털콘텐츠, 행복한은 의료·생활 혜택이다.

NoteBase

20. 우체국 금융의 제휴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체국은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제휴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심사기준으로 별도의 자격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

② 우체국은 증권·선물회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고객의 증권·선물 계좌개설을 대행하고 있다.

③ 우체국과 민간은행은 업무제휴를 맺어 제휴 은행 고객이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타행환 거래방식이 아닌 자행 거래방식으로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다.

④ 우체국은 카드·캐피탈 회사 등과 개별 이용약정을 통해 전국 우체국에서 CMS 입금 업무를 대행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금융의 제휴 서비스별 업무 내용과 체크카드의 발급 성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체국 금융의 제휴 서비스는 외부 금융회사 등과 협약하여 우체국 창구와 금융망을 통해 카드 발급, 계좌개설 대행, 입·출금 및 CMS 입금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체크카드는 예금계좌 잔액 범위에서 결제하므로 신용공여를 전제로 하는 별도의 신용 자격심사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심사기준으로 별도의 자격 기준을 부여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제휴 체크카드는 연결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에서 사용하는 카드이므로 신용카드처럼 별도의 신용 자격을 심사하여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우체국이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제휴 체크카드를 발급하되, 별도의 신용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② O — 우체국은 증권·선물회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고객의 증권·선물 계좌개설을 대행할 수 있다.

③ O — 우체국과 업무제휴를 맺은 민간은행의 고객은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자동화 거래방식이 아닌 자행 거래방식으로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다.

④ O — 우체국은 카드회사·캐피탈회사 등과 개별 이용약정을 체결하여 전국 우체국에서 CMS 입금 업무를 대행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카드 발급'이라는 말 때문에 신용카드의 자격심사를 체크카드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체크카드는 계좌 잔액을 사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에서 제휴 상대방과 우체국이 대행하는 업무를 연결하고, 카드 관련 선지는 신용공여 여부를 확인한다. 예금 잔액 범위에서 결제하는 체크카드에 별도의 신용 자격심사를 붙이면 틀린 설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체크카드는 계좌 잔액 결제이므로 별도의 신용 자격심사를 하지 않는다. 증권·선물은 계좌개설 대행, 제휴 은행은 창구 입·출금, 카드·캐피탈은 CMS 입금 대행으로 정리한다.

NoteBase